



의안번호

제62호

**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22. 4. 13.

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62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4. 13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한도액을 증액하여 소상공인 제정해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으로 변경(안 제4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3. 10 ~ 2022. 3. 31(21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기업지원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3천만원” 을 “5천만원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뉴딜경제과장	유 재 락
	기업지원팀장	홍 세 기
	담당자	전 중 훈 (746-6042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특례보증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<u>3천만원</u> 이하로 한다.</p>	<p>제4조(특례보증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<u>5천만원</u>----- --.</p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◎ 해당없음

2. 비용추계결과

◎ 해당없음

나. 추계결과

◎ 해당없음

3. 작성자

뉴딜경제과장 유재락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

□ 「소상공인 기본법」

제2조(정의)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

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11조(용자계획의 수립 등) 도지사는 매년 기금의 용자실시 이전에 용자 규모, 용자대상사업, 자금별 지원한도액, 용자금리, 용자기간 등에 관한 용자계획을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□ 「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

제4조 (용자계획의 공고)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계획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도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재해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.